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44

발의연월일: 2021. 7. 1.

발 의 자:윤재갑·김윤덕·홍성국

신정훈 • 이개호 • 어기구

문진석 • 홍문표 • 위성곤

양정숙・설 훈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(이하 "품종목록"이라함)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, 품종목록에 등재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부 품종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름으로 유통되고 신품종으로 둔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,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(안 제18조 및 제53조의2 신설 등).

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"공고"를 "공고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재필증을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게시하여야 한다.

제7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벌칙)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56조제2항 중 "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·보관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

-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재필증을 구매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·보관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18조(품종목록	등재품종의	공	제18조(품종목록 등재품종의 <u>공</u>
<u>고</u>) (생 략)			<u>고 등</u>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
			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
			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
			재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목록
			등재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
			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
			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		③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제1
			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
			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경
			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
			등재필증을 농림축산식품부령
		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
			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
			<u>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		제53조의2(벌칙) 제17조제4항에
			따라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
			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
			하여 판매하는 자는 7년 이하
			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
			금에 처한다.

제5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
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
·보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략)

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- - -----.
 - 1.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재필증을 구매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·보관한 자
 - ③ (현행과 같음)